

대신대학교 대학원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내규는 학위논문제출자격을 위한 자격시험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시행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자격시험

제2조(자격시험 종류) 석사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한다.

제3조(자격시험 응시) 자격시험 응시원서는 교학과에 응시원서 양식을 받아 소정기간 내에 제출하여 응시하여야 한다.

제4조(시험위원) 자격시험의 시험위원은 외국어시험에 있어서는 대학원장이 위촉하며 종합시험의 시험위원은 각 학과장의 추천에 의해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출제방법) 자격시험의 출제방법은 각 시험과목마다 2명 이상의 교수가 출제 및 채점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 3 장 외국어시험

제6조(응시자격) 외국어시험 응시자격은 1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한다.

제7조(시험시기) 외국어시험은 매 학기초에 실시한다.

제8조(시험과목) 외국어시험은 영어로 하며 이외의 외국어는 주임교수의 추천을 얻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시험시간) 외국어시험 시간은 60분으로 한다.

제10조(합격인정) 외국어시험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11조(재응시)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당해 학기 경과 후에 재 응시할 수 있다.

제 4 장 종합시험

제12조(응시자격)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3학기 이상 정규등록과 석사과정 24학점 이상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

제13조(시험시기) 종합시험은 매 학기초에 실시한다.

제14조(시험과목) 종합시험의 과목은 각 학과장 교수가 지정한다.

제15조(시험시간) 시험시간은 100분으로 한다.

제16조(합격인정) 종합시험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17조(재응시)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당해 학기 경과 후에 재 응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